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0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제도 도입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9.

다.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토석류 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제도 도입(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신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현행	개정안
④ · ⑤ (생략)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법 제9조제2항¹⁾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 등 산림관리기반시설²⁾의 설치 시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타당성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도시설
 -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 다. 삭제
 -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설치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다가 2022년도부터는 직접사업 또는 민간위탁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중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산림청 소관 기타 공공기관⁴⁾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2022년도 5건(계약액 7억 3,600만원) 및 2023년도 6건(계약액 20억 4,400만원)을 수탁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토석류방지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3항⁵⁾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도에 관한 업무로는 “임도사업 관련조사, 임도시설의 점검 및 안전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등)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4.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4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④ 민간임도의 경우 평가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2024년도 2월 6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5)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임도시설의 점검·안전진단
2. 사방기술·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복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진단, 임도기술에 관한 국제교류, 임도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만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임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에서 임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의 유역을 지나고 있음에도 해당 임도를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입법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타당성 평가를 평가위원회 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타당성 평가를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되

6) 「2023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산림청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p.225

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전문기관의 지정 주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전문기관 도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 고 1

임도 개념 및 종류별 비교

가. 임도의 개념

○ 산림자원 경영·관리·보호를 위한 도로(林道)

- 도로(길)는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이 있으며, 임도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공익적 활동을 위한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을 수행

* 임도는 도로(지목 : 道)와 달리 개설 후에도 지목 변경 없이 산림으로 관리

나. 임도 종류 및 개념도

○ 임도의 종류별 비교

구분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시설 기준	○유효너비 : 3.5 ~ 5m *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의 교행 을 위한 노폭 ○주·정차 및 산불대응장소, 차 량 교 행 장 소 (간 격 200~300m), 산불지휘본부 설치장소, 취수장 설치 등	○유효너비 : 3.0m 이상 ○대피소 설치 (간격 300m 이내) * 취수장 없음	○유효너비 : 2.5~3.0m ○목재생산운반 등 기계 화에 필요한 최소규격
대 상 지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 지 인접지역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또 는 민가 주변 등 보호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과 인 접한 산림	○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 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한 지역	○인공 조림지 등 산림사 업이 집중되고, 기계화 작업이 시급한 지역
주요 기능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 치하는 임도 -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투입 통로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 림경영과 산림정비를 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 - 도로와 도로 및 마을 간 연결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 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간선임도에서 연결

자료 : 산림청

참 고 2

임도 타당성 평가 기준 및 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관련)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 (1)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임도거리의 20퍼센트 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임도거리의 30퍼센트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확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2.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총100점)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 요 성	50					
가. 산림경영	20	활용도	매우 높음(20)	높음(16)	보통(12)	낮음(8)
나. 산림보호 및 관 리	20	활용도	매우 높음(20)	높음(16)	보통(12)	낮음(8)
다. 산림휴양자원이 용	5	활용도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라. 농산촌마을 연결	5	활용도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2. 적 합 성	50					
가. 경사도	15	35도 이상 구간	5퍼센트미만 (15)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2)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9)	10퍼센트 이상 (6)
나. 도로와의 연결성	10	300미터 이내 구간	5퍼센트미만 (10)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다. 토 질	15	화강암질 풍화토구간	10퍼센트미만 (15)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12)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9)	20퍼센트 이상 (6)
라. 노출암반	10	암반지역 구간	20퍼센트미만 (10)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8)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	30퍼센트 이상 (4)
3. 환 경 성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가·불가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나. 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	가·불가	포함 여부	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제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	가·불가	발생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에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참 고 3

타당성평가 절차

가. 지방산림청(국유림)/시도(공·사유림)/시군구(사유림) 직접 수행(직접사업)

관리소/시군구/ 산주	⇒ 지방청/시도/시군구 (민간임도)	⇒ 지방청&관리소/ 시도&시군구	⇒ 지방청/시도/시군구
○ 대상지 선정 제출	○ 타당성평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타당성평가 위원 섭외	○ 타당성평가 실시(평가 위원 소집 및 현장평가)	○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

나. 지방산림청 용역수행(민간위탁)

대상지 제출	○ 지방청별 : 소관 부서에서 선정 제출
↓	
대상지 검토	○ 수행기관 자체 검토 및 검증 수행 * 단, 노선의 선형 등 평가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는 대상지 변경 제출
↓	
대상지 현황분석 및 공간분석	○ 일반현황, 기상정보, 법적저촉사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규제사항 및 대상지 공간분석 등 수리분석 * (용역) LiDAR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수치지형도 추출 및 상세지형 판독 등
↓	
대상지 현장조사	○ 대상지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 (용역) 묘지유무, 산지경사 급한 구간, 대규모 암반사면 등
↓	
평 가	○ 평가 : 산림공학전문가, 생태환경전문가 등 5명 * 대상지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
↓	
완 료	○ 종합 결론 및 평가완료

자료 : 산림청

